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 556 호 2016. 4. 1(금)

조 례

남해군조례 제2173호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남해군조례 제2174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남해군조례 제2175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6

고 시

제2016 - 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 7

공 고

제2016 - 247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제2016 - 253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16 - 270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공고 ····· 51

알 림

남해군의회 규칙 제24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4
보건소공고 제2016-7호 **남해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 입법예고** ····· 98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남해군 조례 제2174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를 “건폐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주무팀장)가 대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⑧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세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위원회가 네 차례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53조제1항제1호 중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을 “변경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5를 제62조로 한다.

제59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9조를 제66조로 하고, 제58조의2를 제59조로 한다.

제60조를 제67조로 하고, 제58조의3을 제60조로 한다.

제61조를 제68조로 하고, 제58조의4를 제61조로 한다.

제62조 다음에 “제8장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삽입한다.

제8장에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5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66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75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1조에 따라”로 하고,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휘·감독”을 “명”으로,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소속 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을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사무직원”을 “사무 직원”으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전문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	점용사용의 면적 ㎡	점용·사용 기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2016-2	2016. 3.29	육상양어장 해수유입송수관설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20-4번 지선	200.0	2016.3.29.-2021.3.28. (5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	강○훈 이○훈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247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보완과 조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 또한 요트학교 휴무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함.

나.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과 요트 계류장 운영 사용허가 조항 일부를 신설하고, 해양관광 다변화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추가 신설(안 제2조 6호, 7호)

나) “60%”를 “60퍼센트”로 하고,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하며, 당연직 위원 “경제과장”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토록 항목수정 및 불필요 항목 삭제(안 제7조 제1, 2, 3, 4, 5항)

다) “전시회”를 “체험행사”로 하고,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 “경기단체”를 삽입하고,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 지급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 2, 3항)

라) 요트학교 휴무일 조정 및 항목수정(안 제26조 제3항 1호, 2호)

마)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초상권” 신설(안 제27조 제1항 별지 1호, 2호 서식 뒷면)

바) “마리나업”으로 허가 받은 자와 필요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8조 제3항)

사)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매월 말 기준 “익월 5일”까지로 항목수정(안 제33조 제5항)

아) 계류장 사용료 세분화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관련 별표 2)

자) “전시회”를 “체험행사”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4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2/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26(남해국민체육센터) 남해군청 체육시설사업소(전화 055-860-8672, 팩스 055-860-37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레포츠"란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말한다.

7.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 대여 등의 업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60%”를 “60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경제과장,”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전시회”를 “체험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 “경기단체” 및 해양레저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마리나업으로 허가 받은 자와 필요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제5항 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전시회”를 “체험행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제27조 관련)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H·P :)		
신청 구분	교 육	□ 딩기(1일) □ 딩기(2일) □ 딩기(3일)		
		□ 크루저(초급) □ 크루저(중급) □ 크루저(고급)		
	체 험	□ 크루저 체험		
교육·체험 희망시기	딩기·크루저 교 육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크루저 체 험	일 자	20 년 월 일	
		시 간	□ 10:00 □ 11:30 □14:00 □15:30 □ 기타( )	
교육·체험인원	딩 기 교 육	명		
	크 루 저 교 육	명		
	크 루 저 체 험	명(36개월 미만 영유아 명)		
수 강 료 감 면 신 청 인 원	□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명) □ 기타(명)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하며, 수강 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제27조 관련)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요트교육 및 크루저체험 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화물질 및 흉기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크루저체험 시 구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4. 선장 및 강사, 안전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5. 수강자의 부주의로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강신청·승인 및 수강료 징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초상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 ~ 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제27조 관련)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H·P :)		
당초 승인 내역	교육	구분	□ 딩기(1일) □ 딩기(2일) □ 딩기(3일) □ 크루저(초급) □ 크루저(중급) □ 크루저(고급)		
		일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인원	명		
	체험	구분	크루저 체험		
		일시	20 년 월 일[□10:00 □11:30 □14:00 □15:30 □기타( )]		
		인원	명		
변경 신청 내역	교육	구분	□ 딩기(1일) □ 딩기(2일) □ 딩기(3일) □ 크루저(초급) □ 크루저(중급) □ 크루저(고급)		
		일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인원	명		
	체험	구분	크루저 체험		
		일시	20 년 월 일[□10:00 □11:30 □14:00 □15:30 □기타( )]		
		인원	명		
수강료 감면 신청 인원			□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명) □ 기타(명)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신청하며, 수강 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요트교육 및 크루저체험 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화물질 및 흉기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크루저체험 시 구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4. 선장 및 강사, 안전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5. 수강자의 부주의로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강신청·승인 및 수강료 징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초상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 ~ 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별표 2] (제30조 관련)

계류장 사용료

시설별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규 격	금 액(원)	
요 트 계류장	일시사용 (척 / 일)	길이 5m 미만	6,000	
		길이 5m 이상 7m 미만	10,000	
		길이 7m 이상 10m 미만	16,000	
		길이 10m 이상	24,000	
	상시사용 (척 / 월)	길이 5m미만	10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110,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3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6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8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0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3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6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0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20,000	
		길이 14m이상	360,000	
비 고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양레포츠"란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말한다.
<신 설>	7.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 대여 등의 업을 말한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60 퍼센트――――――――――――――――.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선출하고――――――――――――――――――――――――――.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위원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삭 제>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등) ① 군수는 군의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등) ① ----------체험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체육단체, 경기단체 및 ----------.
<신 설>	③ 군수는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② (생 략)	제2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요트학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 매주 월요일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2.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허가) ①·② (생 략)	제28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마리나업으로 허가 받은 자와 필요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 ④ (생 략)	제33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지출에 관한 사	⑤----------

항은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일~~ 5일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7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따른 해양레포츠 경기대회 및 전시회 등 개최	4 ~~.~~ 체험행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별지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 5 (생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강신청·승인 및 수강료 징수,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자료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 5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 ---------- 초상권- ○---------- ----------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 5 (생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 5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강신청·승인 및 수강료 징수,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생략)	○──────────────────── ──────────────────── ------------------------- ○──────────────────── ------------------- 초상권 ○──────────────────── -------------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시설명	사용구분	현 행 사 용 료		개 정 (안)	
		규 격	금액(원)	규 격	금 액(원)
요트계류장	일시사용(척/일)	길이 5m미만	6,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5m이상 7m미만	10,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7m이상 10m미만	16,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길이 10m이상	24,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상시사용(척/월)	길이 5m미만	100,000	길이 5m미만	100,000
		길이 5m이상 7m미만	16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110,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30,000
		길이 7m이상 10m미만	24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6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8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00,000
		길이 10m이상	36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3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6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0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20,000
				길이 14m이상	360,000
비고	-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요트길이 14m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할 수 있다.				

【관련법령】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13호, 2015.7.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1. ~ 4(생략)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253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변경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재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현행 인적재난·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통합
   ○ 상황판단회의의 기능 및 소집대상 구체화(안 제3조)
   ○ 대책본부의 기능 구체화(안 제4조)
   ○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변경(안 제7조~제10조)
      · 대책본부 실무반을 상황관리 총괄반 및 12개 협업기능으로 변경
      · 비상단계 편성기준 및 실무반 근무인원 변경
   ○ 대책본부회의의 기능·구성 및 운영·소집사항 구체화(안 제11조~제13조)
   ○ 재난상황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조항 신설(안 제15조, 제16조)

○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사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055-860-3426, 팩스 055-860-372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 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해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 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 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근무 및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총괄과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하고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협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필요시 통제관이 담당관이 될 수 있다.

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 운영체계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나뉜다.

② 준비단계의 운영체계는 별표 2와 같고,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

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및 유관 기관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의 간사는 재난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주관은 의장이 하고, 의장의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며,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 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를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제21조(전결사항) 대책본부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5조 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해군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과
미래창조과학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행정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행정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과
행정자치부	8. 정부중요시설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경제과 - 경제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남해군 주관부서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해당부서 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교통과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 도시건축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국민안전처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4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환경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군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군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 제1항 관련)

1. 상시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평상시 - 태풍정보, 호우·대설 예비특보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당직 근무자

2. 사전대비단계

가. 편성기준 : 태풍 예비특보, 호우·대설 주의보 발효시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2명, 당직근무자, 각부서 1명, 읍면 2명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각 부서·읍면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군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

1.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 태 풍 : 주의보 발효시

○ 호우·대설 : 경보 발효시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업무주관부서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실 무 반		
근무인원	총 3+α명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 안전총괄과 (1+α)
	상황보고서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 안전총괄과 (1+α)
	행정지원팀	- 행정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

※ 유관기관(β)과 상시연락 체계 구축

나. 비상2단계

○ 태 풍 : 경보 발효시

○ 호우·대설 : 경보 발효 후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시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재난업무주관부서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부서장	
실 무 반		
근무인원	총 4+α+β 명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 안전총괄과 (1+α)
	상황보고서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 안전총괄과 (2+α)
	행정지원팀	- 행정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

다. 비상3단계

○ 태　　풍 : 경보 발효 후 극심한 피해 발생시

○ 호우·대설 : 경보 발효 후 광역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시

<table>
<tr><td>본 부 장</td><td colspan="2">군수</td></tr>
<tr><td>차　　장</td><td colspan="2">부군수</td></tr>
<tr><td>통 제 관</td><td colspan="2">재난업무주관부서장</td></tr>
<tr><td>담 당 관</td><td colspan="2">재난수습주관부서장</td></tr>
<tr><td colspan="3">실 무 반</td></tr>
<tr><td>근무인원</td><td colspan="2">총 5+α+β명</td></tr>
<tr><td rowspan="3">상황관리
총괄반</td><td>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td><td>- 안전총괄과 (1+α)</td></tr>
<tr><td>상황보고서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td><td>- 안전총괄과 (2+α)</td></tr>
<tr><td>행정지원팀</td><td>- 행정과(2+α)</td></tr>
<tr><td colspan="2">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td><td>긴급생활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td></tr>
<tr><td colspan="2">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td><td>-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td></tr>
</table>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의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재난수습 주관부서
	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행정과
	긴급생활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및 상황 관리	주민복지실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	안정지원반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업무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군 복구현황 파악	환경녹지과
	긴급 통신지원반	2. 통신시설 긴급 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군 복구현황 파악	행정과
	시설 응급복구반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에너지 기능복구반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군 복구현황 파악	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기획감사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1.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건설교통과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비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반		2.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해양수산과
	의료·방역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주민복지실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남해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업무 2. 재난지역 구급 업무 3.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 업무	남해소방서
유관기관 등 지원반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3. 근무방법

-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반의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 비상단계별 가동기준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군 대책본부 운영체계(제7조)

1. 편성기준

①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실무반 편성

<table>
<tr><td>통 제 관
(재난주관부서장)</td><td colspan="2">○ 본부장, 차장 보좌</td></tr>
<tr><td>담 당 관
(재난수습부서장)</td><td colspan="2">○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td></tr>
<tr><td colspan="3">실무반 편성</td></tr>
<tr><td>근무인원</td><td colspan="2">총 5+α+β 명</td></tr>
<tr><td rowspan="3">상황관리
총괄반</td><td>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td><td>- 안전총괄과 (1)</td></tr>
<tr><td>상황보고서 작성</td><td>- 재난수습주관부서(1)
- 안전총괄과(1)</td></tr>
<tr><td>행정지원</td><td>- 행정과(2+α)</td></tr>
<tr><td>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td><td colspan="2">긴급생활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td></tr>
<tr><td>관계부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td><td colspan="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남해소방서, 39사단118연대2대대 등)</td></tr>
</table>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①재난상황 관리기능	상황관리팀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③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④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⑦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⑪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⑫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3. 근무방법 : 별표3 자연재난 근무방법과 동일

[별표 5]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8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1조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유관기관 파견요구		○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제19조 관련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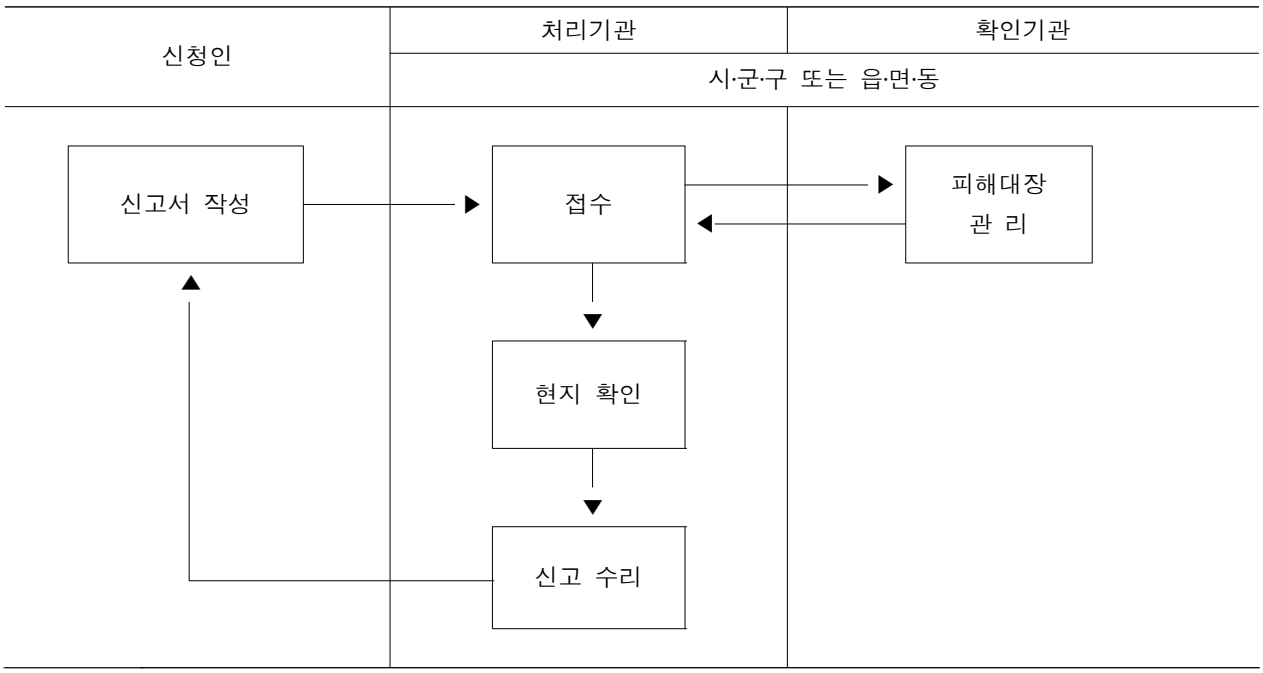

■ [별지 제2호 서식] 제19조 관련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 중앙 직 성명 (인)
└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남해군 공고 제 2016-270 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전년도에는 3회의 태풍이 내습하였으나 태풍의 강도가 약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 우리 군의 재난발생현황은 평균적으로 태풍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가장 큽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 담당부서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팀, 민방위팀, 복구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현원은 15명으로 2014년에 비해 1명 증가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등 8종으로 274개소에 설치·관리 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 농어촌경보시스템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음. 상시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재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관련 분야 27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32명과 지역주민 334명은 재난관리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화재예방 홍보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시민 2720명이 참여한 안전점검 캠페인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가의 재난대응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도단위 민방위 훈련을 지역 언론과 군 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SNS로 홍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관련된 14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49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개정에 따라 개소수 축소 조정하였음. 재난위험 건축물 1개소(시설 노후화)는 2015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지속 보수·보강 조치 중이며 2016년 철거 예정입니다.

– 하천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휀스, 유흡착제, 유처리제 등 방재 물자가 있으며 여러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 포대류 등의 공동물자를 각 부서 및 읍·면 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1개 병원, 1개의 보건소에 135개의 병상과 31명의 의사 및 42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 학교, 마을회관, 민간시설 등 주민 2만9천여명을 대피, 수용할 수 있는 66개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 복구장비는 민·관 포함하여 크레인, 백호, 덤프트럭 등 49대를, 기타장비는 무전기, 발전기, 수중펌프 등 7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술인력은 건축, 토목 2개분야 4명을, 기능인력은 전기 · 기계 · 통신 · 용접 · 중기운전 등 7개 분야 28명이 있으며

– 의용소방대 · 주민자율방재단 등 23개의 특수단체 · 자원 봉사단체 4,701명이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확보 기준액은 117백만원으로 현재 100% 확보된 117백만원 입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106.8백만원 보다 10.2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124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6백만원으로 5년 평균보다 22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9등급에 속했고, 2014년도 진단결과와 동일하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 - - -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현재 201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면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중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행정적 노력(위험관리능력)과 안전도는 양호하나,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위험환경), 방재성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기상특보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5.7.11. ~7.13.	태풍 (찬홈)	호우특보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
15.7.22. ~7.26.	태풍 (할롤라)	태풍예비특보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
15.8.23. ~8.27.	태풍 (고니)	태풍예비특보 태풍특보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	-

☞ 전년도에는 3회의 태풍이 내습하였으나 태풍의 강도가 약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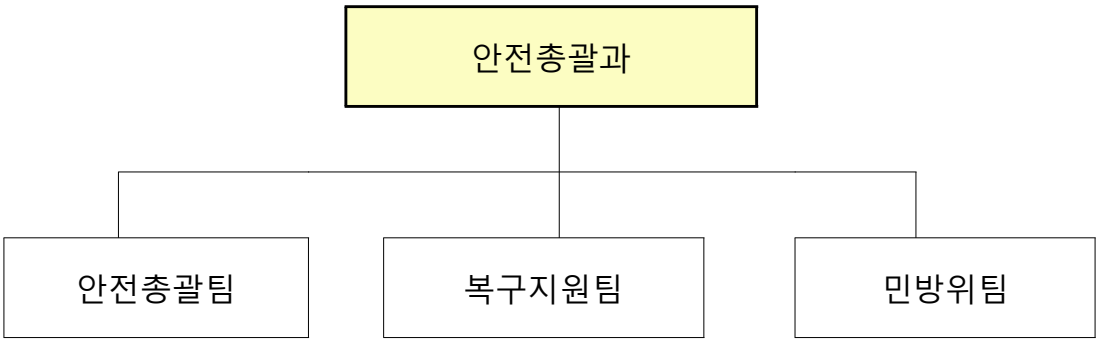

나. 정원 (안전총괄과)

과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전총괄과	정원	16	16	-	1	3	4	7	1	-	-
	현원	15	15	-	1	3	4	5	2	-	-

◈ 연도별 비교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계	15	15	14	15
일반직 현원(인원)	13	15	14	15
기능직 현원(인원)	2	-	-	-
별정직 현원(인원)	-	-	-	-
전문경력관 현원(인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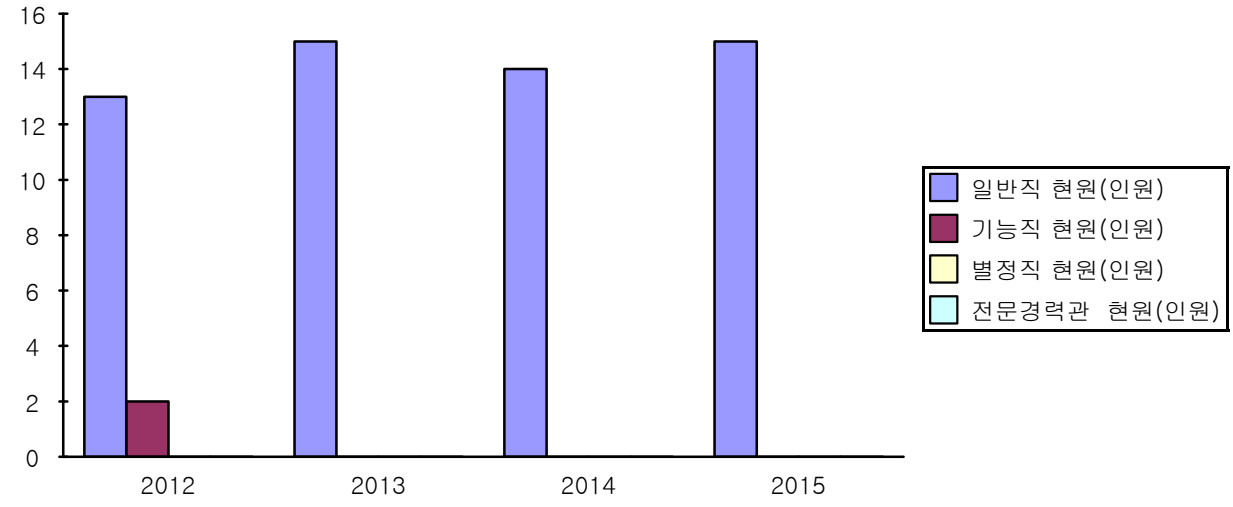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 2013.12.1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외 특별한 인원 변동은 없음
- 2014년도 국민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2015년도 안전총괄과 1명 인원 확충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9	전읍면
자동우량관측장비	3	상주, 삼동, 미조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9 (상주면 제외, 기상청 장비)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	서면, 삼동
재해문자전광판	6	읍, 상주, 미조, 남면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읍,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위성전화기	6	읍,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3	이동, 서면, 상주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	237	238	239
자동우량관측장비	10	10	10	10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7	8	9	9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	3	3	2
재해문자전광판	6	6	6	6
위성전화기	6	6	6	6
민방위경보시설	5	5	5	6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	-	-	3
기 타(위성 DMB)	1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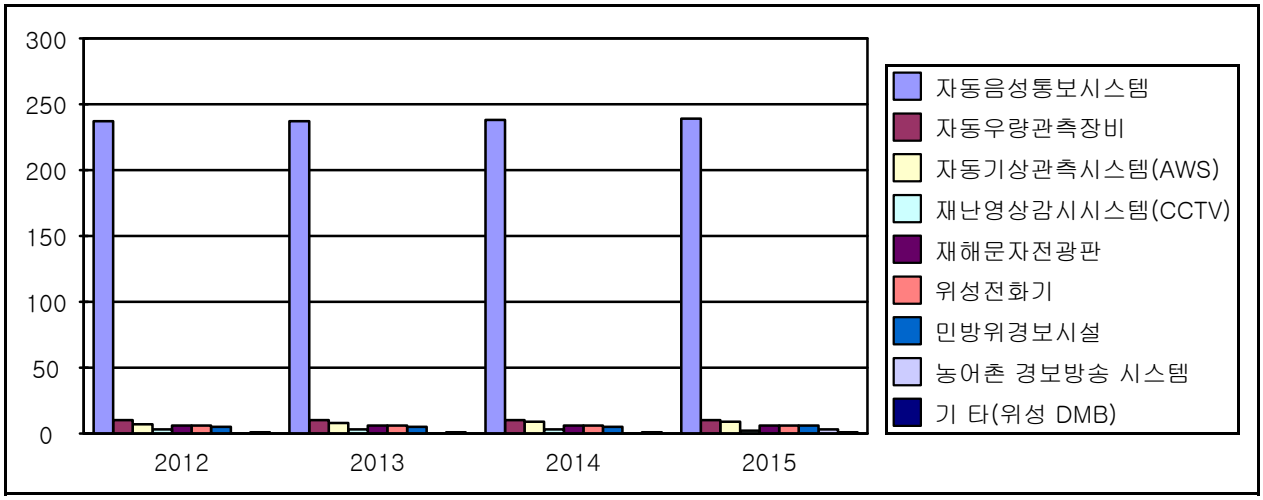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종합계획(5년 단위)에 따라 구축
- 전읍면 AWS 시스템 구축완료(1개소는 기상청 자료 연동)
- 기 구축된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로 상시 정상작동
- 농어촌 경보방송시스템 3개소 시설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기간(일)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소 계			**156**	
재난관리 실태점검 추진방향 등 설명회	1	국민안전처	1	15.01.28.
2015 동원자원 순회교육	1		2	15.01.28.
2015 민방위 업무지침 설명회	1	국민안전처	1	15.02.09.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순회교육	1	국민안전처	1	15.02.25.
2015 산불방지 전문교육	1		1	15.03.02.
산불방지 기본교육	1	남해군	10	15.03.10.
공직자 민방위 실전훈련(교육)	1	남해군	4	15.04.28.

과정명	기간(일)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5 상수도 누수율 저감 워크숍	1		1	15.04.29.
방재담당공무원 직무교육	1	경상남도	10	15.05.28.
2015 하반기 수질오염사고 담당자 교육	1		1	15.07.24.
2015 을지연습 공무원 안보교육	1	남해군	1	15.7.30.
2015 을지연습 근무자 자체교육	1	남해처	25	15.08.12.
지역안전지수 의견수렴 워크숍	1	국민안전처	1	15.09.02.
2015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직무교육	1		1	15.09.04.
환경영향평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5.09.07.
2015 하반기 산불방지 교육	1		3	15.10.05.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참석	1	경상남도	1	15.10.20.
지자체 지진업무담당자 권역별 순회교육	1		3	15.10.23.
2015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치 설명회	1	국민안전처	1	15.10.29.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교육	1	남해군	16	15.11.10.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15.11.18.
재난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훈련 교육	1	남해군	65	15.12.03.
어업질서 및 어선안전 조업지도 워크숍	1	경상남도	1	15.12.04.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	영산강환경유역청	1	15.12.08.
환경오염물질 배축시설 적정 관리 설명회	1	경상남도	1	15.12.09.
2015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1	경상남도	1	15.12.18.
2016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지침 교육	1	남해군	1	15.12.22.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 · 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소 계	**32**			
2015.4.7	군청 회의실	30	방재단 임무분담 점검 및 자체교육	남해군	
2015. 10.29.~10.30.	지역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2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교육	국민안전처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 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소 계		**334**		
제397차 민방공 대피훈련	2015.3.16.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29	대피훈련 도움	남해군
주부민방위 실기경연 및 안전캠페인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2015.5.18.	남해소방서	21	안전교육	
안전한국훈련	2015.5.20.	남해대학	34	다중이용시설 화재진압훈련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 한마음대회	2015.11.27.	남해실내체육관	250	안보특강 및 민방위 동영상 시청	남해군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소 계	423	254	567	52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27	22	50	15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30	32	26	32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66	200	491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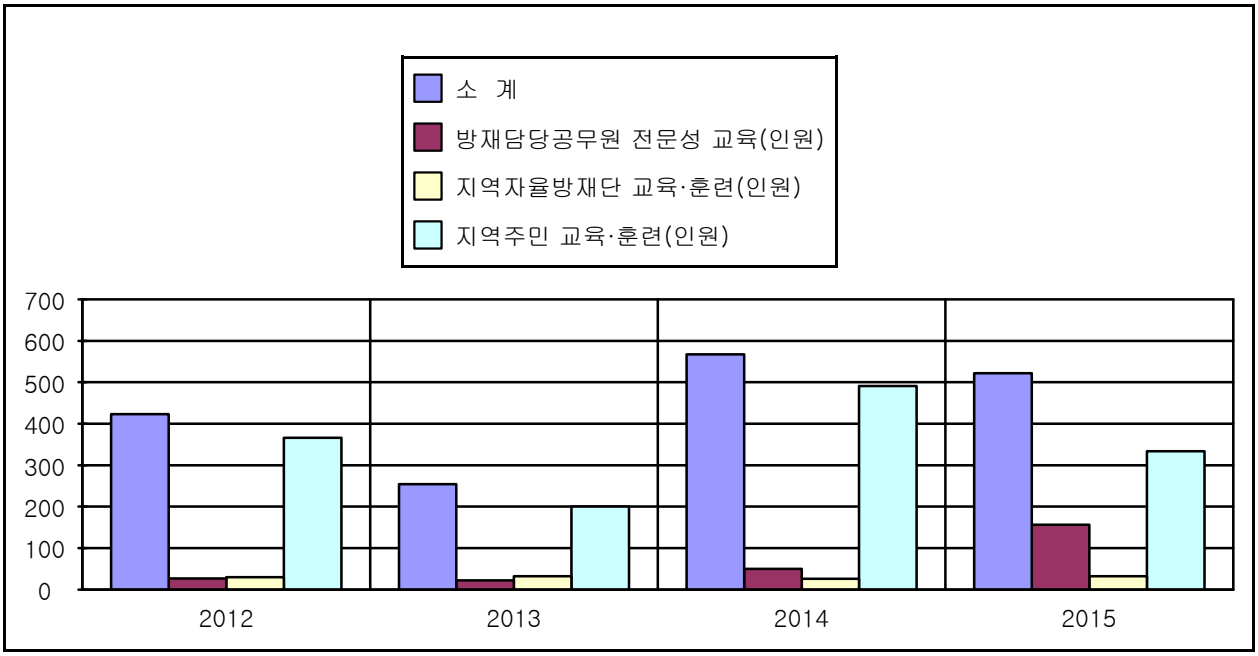

☞ 교육 · 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남해군 자체교육이 늘어나면서 방재담당공무원 교육인원 증가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 · 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 · 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5.12.3	경남도청 신관	1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교육	경상남도	

◈ 제보 · 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11년(26명)	10	9	-	1	
‘12년(26명)	30	7	22	1	
‘13년(34명)	66	39	25	2	
‘14년(33명)	17	17	-	-	
‘15년(33명)	11	6	5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1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안전문화 캠페인	명절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	2.12	**남해읍 공설시장**	37	
2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홍보	2.15	이동면 공설시장	15	
3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홍보, 농기계 안전사고 홍보	4.7	**남해읍 공설시장**	20	
4	축제장 안전문화 캠페인	행락철 자동차 안전운행, 농기계 안전사고 홍보	5.24	보물섬마늘축제장	20	
5	축제장 안전지킴이 부스 운영	심폐소생술 체험, 안전신문고 홍보	5.23 ~ 5.25	보물섬마늘축제장	15	
6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물놀이 안전, 메르스 예방,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7.3	**상수은모래비치 일원**	60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7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물놀이 안전, 메르스 예방,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7.10	**송정솔바람해변 일원**	20	
8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물놀이 안전캠페인 홍보 및 심폐소생술 체험**	8.12	**상수은모래비치 일원**	25	
9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안전문화 캠페인	**추석명절 안전, 화재예방**	9.22	**남해읍 공설시장**	40	
10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신문고, 풍수해보험,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	12.14	**남해읍 공설시장**	2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

연번	보도내용	보도일자	언론사	비고
1	우리 동네 안전정보 '클릭' 한 번이면 한 눈에 '쏙'	1월 28일	뉴스웨이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경남도민신문	
2	남해군, 해빙기 재난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1월 28일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 NEWS 경남 창원일보	
3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1분기 간담회 개최	2월 2일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화재예방 및 내고장 가꾸기 활동 펼쳐	2월 9일	NEWS 경남 전국매일 창원일보	
5	남해군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월 25일	경남도민신문	

연번	보도내용	보도일자	언론사	비고
6	남해군 방위단체, 독수리(F/E)훈련 기간 군부대 위문 방문	3월 10일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NEWS 경남	
7	남해군, 안전신문고 앱 활용 홍보 나서	3월 16일	전국매일	
8	심폐소생술 실습하는 박영일 남해군수	3월 17일	NEWS 경남 경남매일 경남일보 창원일보	
9	경남지방병무청장, 남해군 방문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개최	4월 29일	경남연합일보	
10	남해군,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월 11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매일	
11	남해군, '지역특성화 민방위 시범훈련' 실시	5월 22일	창원일보	
12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강화	06월 01일	경남연합일보 전국매일	
13	남해군, 하절기 폭염대비 종합대책 마련	06월 12일	경남매일 창원일보 NEWS 경남	
1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내고장 가꾸기 활동 전개	06월 15일	경남매일 창원일보 NEWS 경남	
15	남해군,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일제점검 실시	06월 23일	경양일보 경남도민신문 경남일보	
16	남해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사전 교육 실시	07월 01일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경남도민신문	
17	남해군, 폭염피해 예방 위한 관내 무더위 쉼터 긴급 점검 나서	08월 06일	창원일보	

연번	보도내용	보도일자	언론사	비고
18	박영일 남해군수,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방문	08월 07일	경남매일 창원일보	
19	남해군, 2015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08월 07일	경남도민신문	
20	남해군,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및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열어	08월 18일	한남일보 창원일보	
21	남해군, 北 도발 관련 대비 태세 '만전'	08월 22일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창원일보 경남도민신문	
22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제21회 남해군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개최	11월 09일	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23	남해군,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	11월 18일	경남매일 창원일보	
24	남해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열어	11월 20일	국제뉴스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경양일보	
25	제1회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한마음대회 및 워크숍 열려	11월 27일	경남매일	
26	남해 자율방재단 동절기 자연재해 제로화	12월 02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경남매일	
27	남해군, 동절기 종합안전대책 추진	12월 14일	서경방송 창원일보 경남도민신문 도민일보 전국매일	
28	남해군, 동절기 대비 가스 전기사고 예방 안전점검 추진	12월 31일	경남연합일보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0	10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4	2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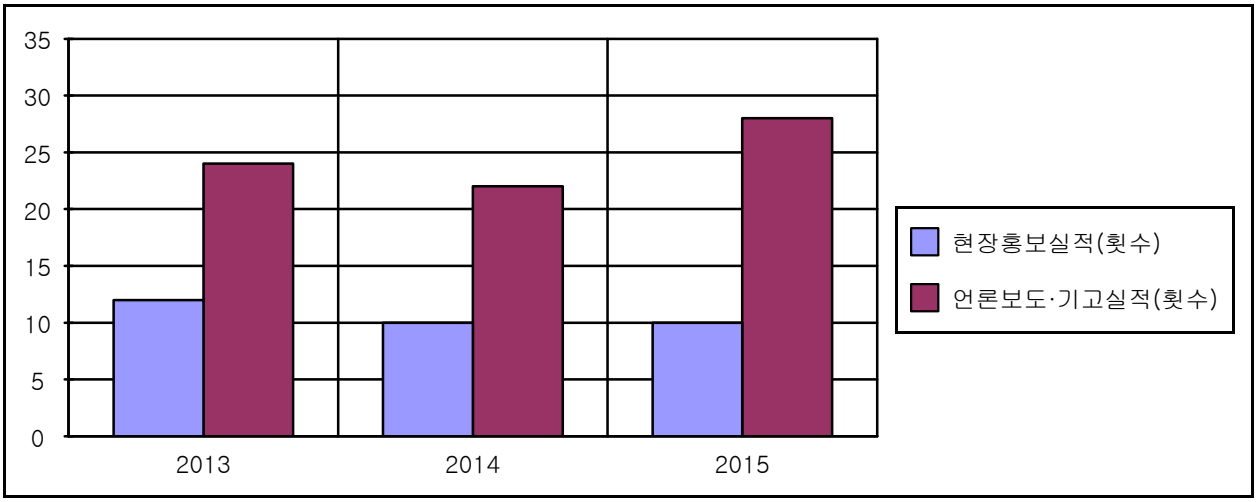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 증가원인

- 현장홍보 실적과 전년도와 비슷했고, 언론보도 실적은 늘어남
- 주부민방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각종 훈련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적극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군수 • 위원 : 16인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 14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군수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군수→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군수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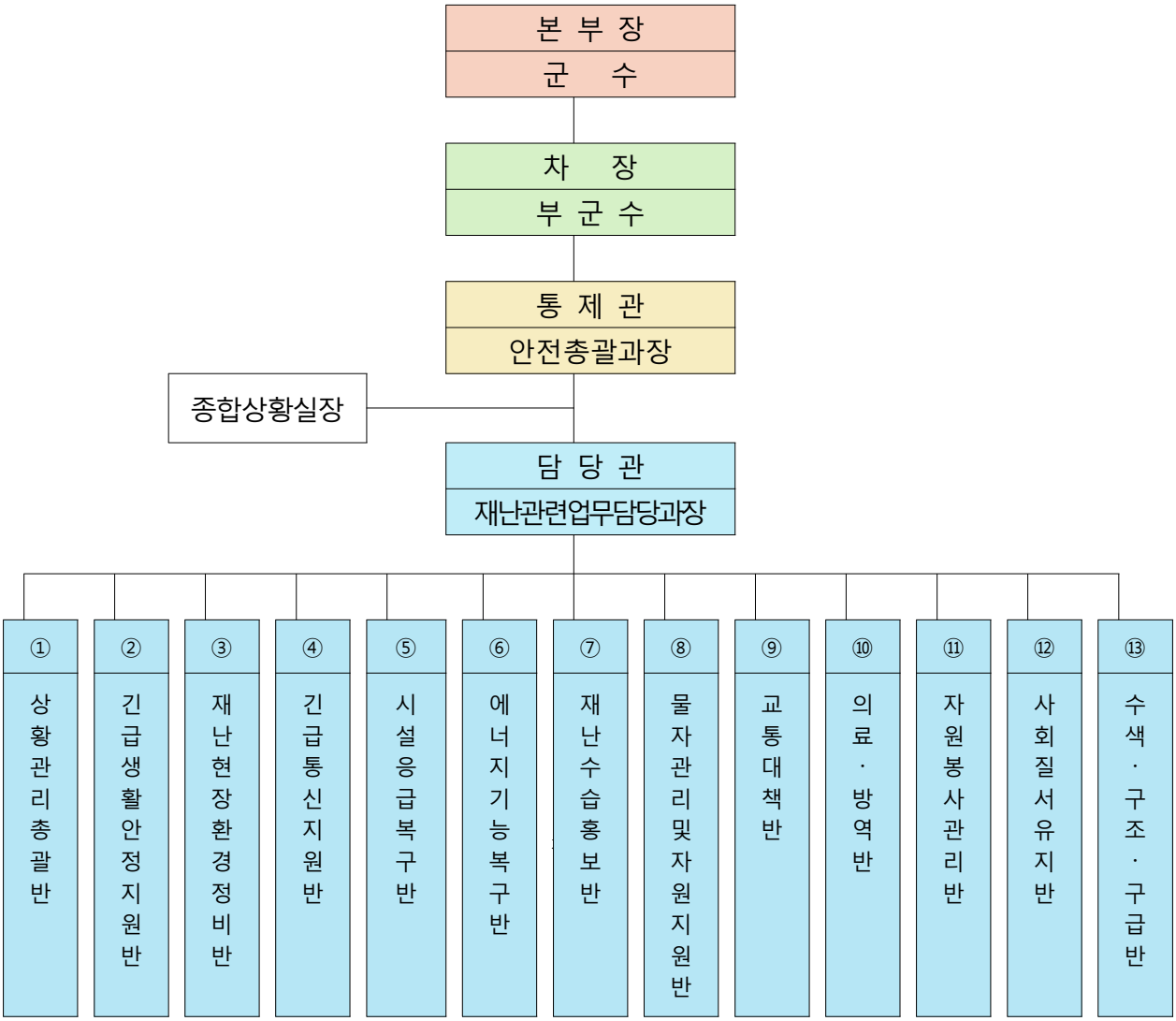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 (안전총괄과)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주민복지실)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녹지과)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행정과)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기획감사실)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남해보건소)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안전총괄과)
* 남해경찰서 협조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안전총괄과)
* 남해소방서 협조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재난유형별 재난대책본부 구성]

재난유형	통제관	담당관	비고(중앙부처·유관기관)
1. 풍수해대책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2. 설해대책	〃	건설교통과장	국민안전처
3. 가뭄대책	〃	환경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국민안전처
4. 지진 및 지진해일	〃	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5. 폭풍해일	〃	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6. 황사	〃	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7. 폭염	〃	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8. 전기·가스·유류	〃	경제과장	국민안전처
9. 해상재난	〃	해양수산과장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영해양경비안전서
10. 독극물 환경오염	〃	환경녹지과장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11. 교통사고	〃	건설교통과장	남해경찰서
12. 산불	〃	농업기술센터장	산림청
13. 도로재난	〃	건설교통과장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난유형	통제관	담당관	비고(중앙부처·유관기관)
14. 건축물 등 시설물	〃	도시건축과장	국민안전처
15. 문화시설 공연장	〃	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
16. 문화재안전대책	〃	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
17. 체육청소년시설	〃	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부
18. 사회복지시설	〃	주민복지실장	보건복지부
19. 보육시설	〃	주민복지실장	보건복지부
20. 폭발, 대형화재	〃	안전총괄과장	소방서

○ 재난안전 대책본부 처리흐름도

〈피해상황 수습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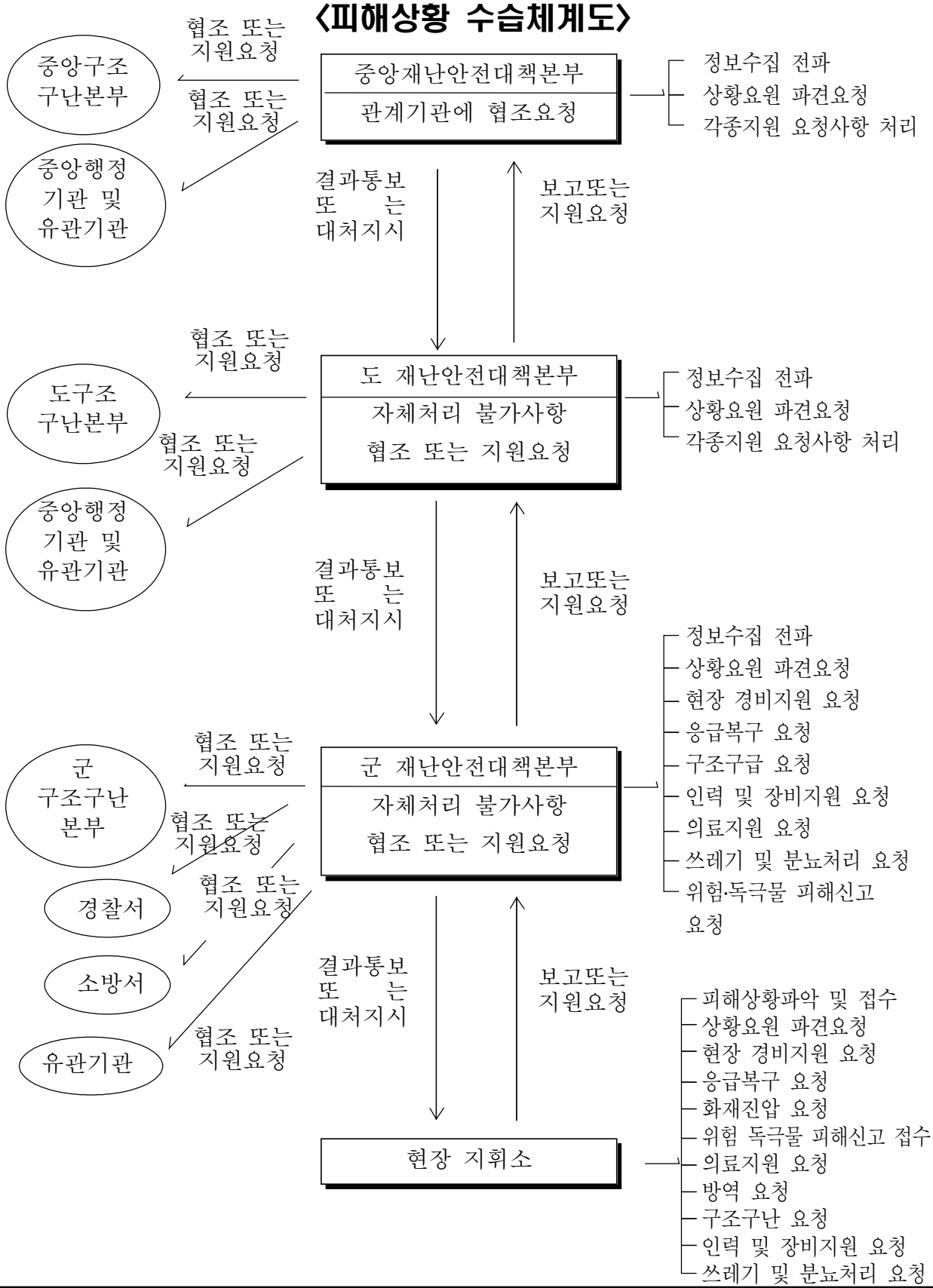

○ 유관기관 주요 역할 · 임무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
남해소방서	-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 긴급구조관련기간의 긴급구조활동 통합·조정
남해경찰서	-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 - 사상자 신원확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
39사단118연대2대대	-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전기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한국전력남해지사	- 전력 설비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KT남해지점	- 통신 시설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남해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 - 이재학생 대책 - 공납금 면제 및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 방재교육 -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및 홍보
부산기상대	- 기상통보 및 특보 발표
통영해양 경비안전서	-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 대규모 해양오염시 방재작업 협조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피서객 대피 - 기상상황 흥보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	2004.12.30.	안전총괄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4.12.30.	안전총괄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	2005.10.04.	안전총괄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005.12.12.	안전총괄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12.29.	안전총괄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사항 규정	2005.12.29.	복구지원팀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	2006.10.02.	안전총괄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04.09.	민방위팀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겨우 건축·형질변경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1.04.15.	복구지원팀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발생시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시 필요한 사항 규정	2012.05.04.	복구지원팀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규정	2013.05.08.	안전총괄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 규정	2014.02.28.	안전총괄팀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12.28.	안전총괄팀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15.12.04.	민방위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송신소	KBS 망운산송신소	통제실	KBS 순천방송국	1978.1.	철조망 CCTV 설치	055-863-0802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유원시설	대형토목공사장	기타	소계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건축공사장	
49	8	1	1	5	1	41	5	19	16	1	-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49	48	21	25	2	1	1	-	
시설물	8	7	4	3	-	1	1	-	
건축물	41	41	17	22	2	-	-	-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111	110	104	105	48
재난위험시설	-	-	1	1	1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49개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년(2010~2014년)에 비하여 개소수 감소하였음.

[재난위험시설 해소]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	해소실적	없음	-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5.1.1 ~'15.6.30	135	135	53	안전총괄과, 소관부서	정비 (현지시정)
하반기	'15.7.1 ~'15.12.31	49	49	66	안전총괄과, 소관부서	정비 (현지시정)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건축물	남해군청	2,840㎡	남해군	'12.6.8	15년 상반기	15	보수보강

☞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 청사 신축 지연 및 업무공간에 따른 보강공사 지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 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부서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석평소하천 정비(3차)	안전총괄과	남해군 이동면 석평마을 일원	소하천 정비 L=0.45km	'15.2 ~ '15.8	1,462	재해예방
복곡소하천 정비(2차)	안전총괄과	남해군 이동면 내산마을 일원	소하천 정비 L=0.37km	'15.2 ~ '15.8	1,444	재해예방
금송소하천 정비	안전총괄과	남해군 삼동면 금송마을 일원	소하천 정비 L=0.69km	'15.10 ~ '16.10	1,000	재해예방
오동댐 재해위험지 구정비	안전총괄과	남해군 남해읍 오동마을 일원	오동수원지 보강 공사 1식	'14.1 ~ '16.5	2,700	재해예방
화천 고향의 강 조성(2차)	안전총괄과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일원	하천 정비 L=0.29km	'15.2 ~ '15.12	3,333	재해예방
양지천 죽전교 재가설	안전총괄과	남해군 남면 죽전마을 일원	교량 1개소 L=19.4m, B=5m	'14.12 ~ '15.7	582	재해예방
상신서민밀집지역 정비	안전총괄과	남해군 창선면 상신마을 일원	배수로 1,004m	'15.4 ~ '15.10	500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029	9,366	5,802	3,701	9,800	1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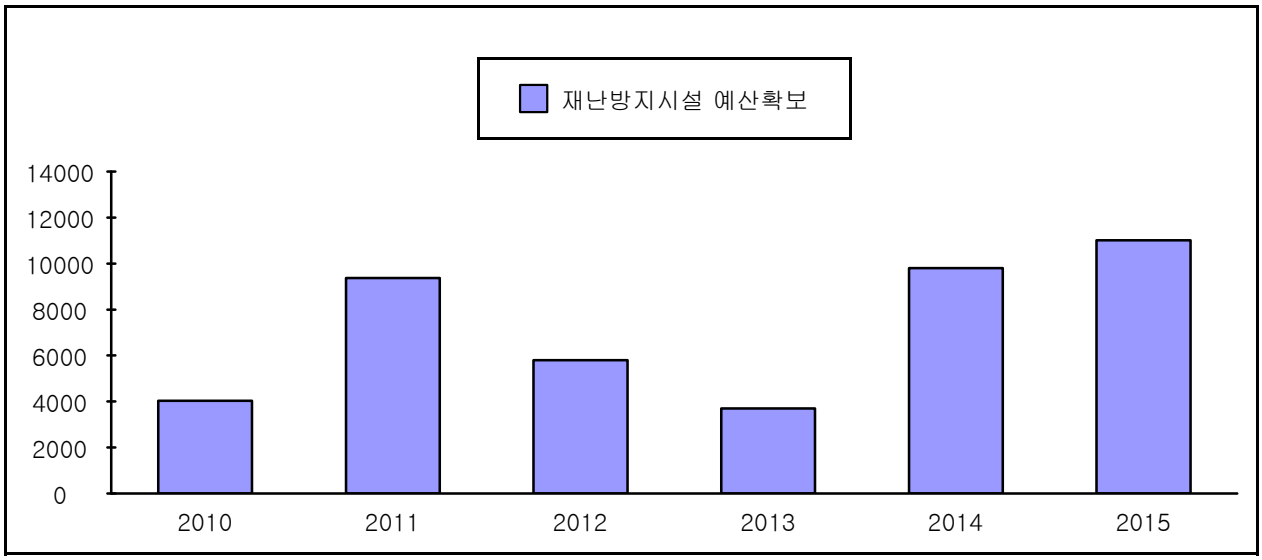

☞ 재난경감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함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 휀스	유흡착 매트	기름 제거제 (유처리제)	방제 작업복	소석회
		m	kg	L	매	ton
총계	23,214	2,052	20,000	162	1,000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2	23	39	3	135	1
병 원	1	11	15	1	135	1
보건소	1	12	24	2	0	0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6	29,952	11	12,570	46	3,006	0	0	2	2,823	7	9,534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

방재물자 종류별	2013	**2014**	**2015**
오일휀스 (m)	34,300	**5,000**	**2,052**
유처리제 (l)	760	**600**	**162**
유흡착매트 (kg)	-	**-**	**20,000**
소 석 회(ton)	0	**0**	
말목	630	**654**	**724**
삽	130	**180**	**449**
모래주머니	165	**200**	**3,550**
방독면	424	**424**	**1,240**
소화기	92	**92**	**40**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 원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자원등록으로 자원변동 폭이 큼

– 삽, 모래주머니 등은 여름철 장마기간, 복구 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보.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의료시설수		2	2	2	2
수용시설	개소	58	58	57	66
	수용인원	14,835	14,835	17,187	29,952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가 원인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큰 변동사항 없음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구급차	구명부표	구명조끼	들것	구조용조명등	구명보트	구명환
총계	**212**	2	8	129	2	1	2	68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백호	궤도굴착기	덤프	화물트럭	청소차	페이로더
총계	**49**	1	7	3	12	24	1	1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탱크트럭(대)	동력펌프(개)	등짐펌프(개)	간이수조(개)	진화도구(개)	진화안전장비세트(set)
총계	**373**	10	0	349	9	-	5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콤푸레사	양수기	발전기	무전기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엔진펌프	수중펌프
총계	**792**	-	-	-	6	245	313	131	73	24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구조장비	3	3	494	212
복구장비	164	201	59	49
산불진화장비	944	979	763	373
기타장비	218	245	678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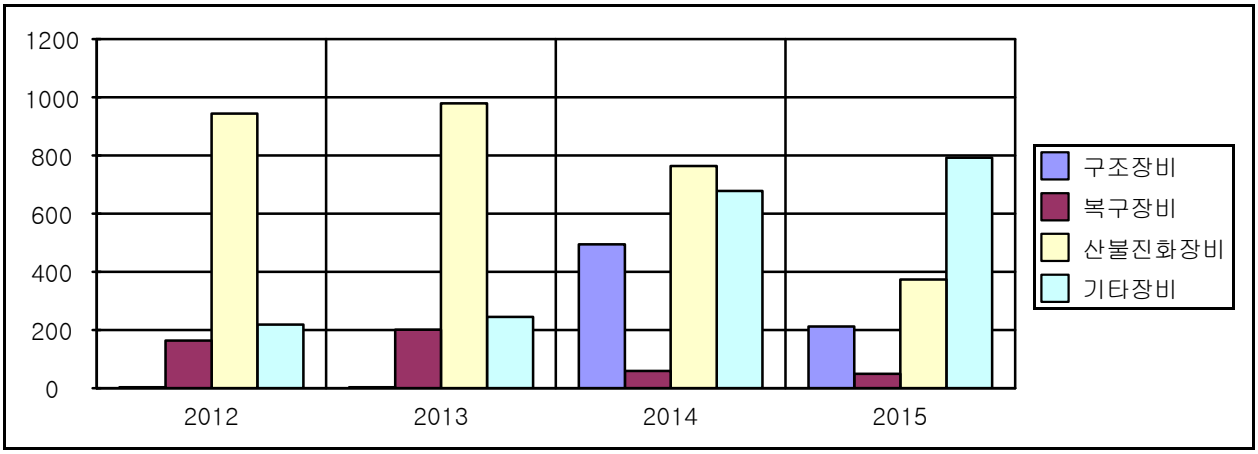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원일제 조사 후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소방서의 장비는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 되면서 제외됨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4	3	1	0	0	0	0	0	0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기타
인원	28	5	1	3	-	-	2	-	11	4	-	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주부민방위대	지역자율방재단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운동남해군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4,508	365	0	140	169		260	100	35	50	2,194	1,195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기술인력	9	15	4	4
기능인력	39	45	29	28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312	2,472	3,779	4,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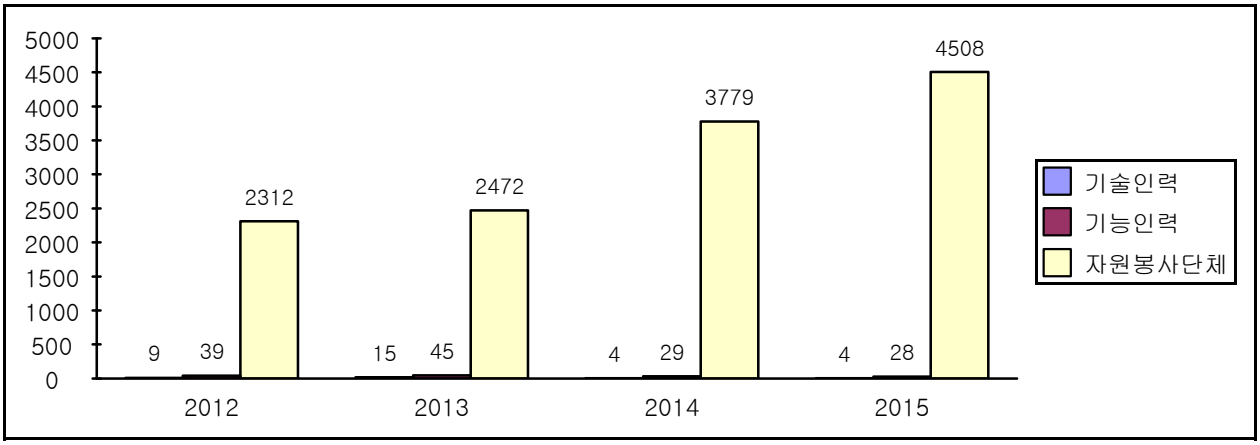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봉사활동 단체들을 일제조사하여 봉사단체 대상 및 회원수가 변동되었음
- 향후 회원들을 격려하여 봉사단체 회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 · 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 · 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 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춘계 하천점검	2015.3.	남해군	보통	
우수저류시설 점검	2015.3.	남해군	보통	
여름철 사전대비 소하천 점검	2015.4.	남해군	보통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2015.6.	남해군	보통	
추계 하천점검	2015.10	남해군	보통	
재해예방사업장 점검	2015.11	남해군	보통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2015.11	남해군	보통	
재난관리 실태점검	2015.12.	남해군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4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소 계	**45**	**27**	**0**	**0**	**63.6%**
공공시설물	35	20	0	0	57.1%
도로시설물	10	7	0	0	7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내진율	25.9	27.3	66.6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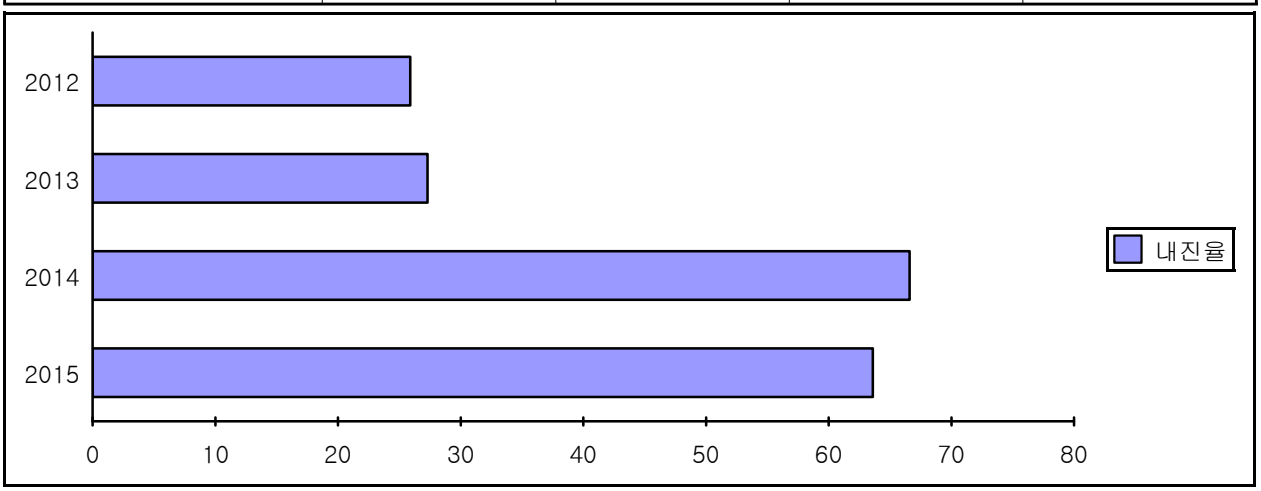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변동이유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시 미반영된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확보 여부가 반영되어 내진율 하강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부	여	
종합상황실	부	부	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실시 중

– 예산 부족으로 전반적인 내진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대본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전력과 통신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진재해 대비책을 추진 중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 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	66	-	-	-	-	254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	-	66
표지판	안내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개소)		-	-	254

☞ 정비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지진긴급대피장소로 별도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임시수용시설을 지진긴급대피장소로 임시 지정하였으며, 차후 지진대피장소 별도 확인 예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39개소), 재해문자전광판(6개소), 민방위경보 사이렌(6개소), 농어촌 경보방송시스템(3개소)를 2014년 공시부터 지진경보시설로 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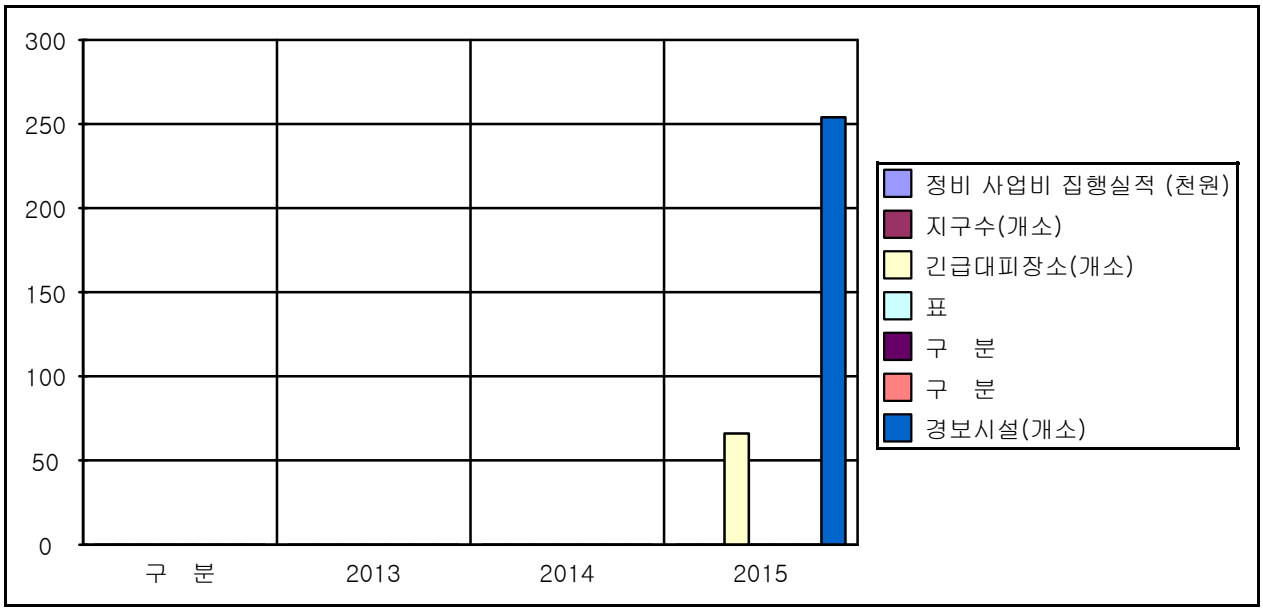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 평균액의 1%	117백만원	117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비교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확 보 액		**91**	**100**	**101**	**105**	**111**	**117**
사용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17	0	9	282	182	85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9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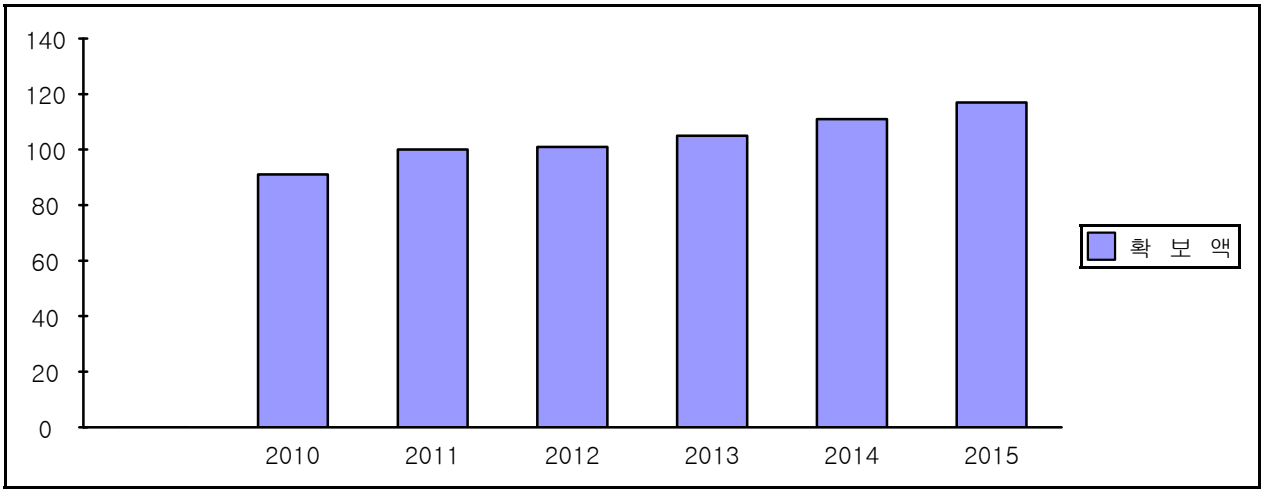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확보액은 법정적립기준(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이 상향되어 다소 증가하였음
- 사용액은 연도별 긴급한 사업 수요발생 여부에 따라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임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남해군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농업과	2013	가축질병 재난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수도과	2013	수질오염 재난
재난초기대응 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사회재난 초기대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4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4	보건의료 재난
식용수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수도과	2014	식용수 재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수도과	2014	유해화학물질유출 재난
육상화물운송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마비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수산과	2014	해양오염사고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정산림과	2014	산불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정산림과	2014	산사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다중밀집시설 화재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해양수산과	2014	해양선박사고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풍수해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지진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화산폭발
공동주택 대형사고 표준행동매뉴얼	도시건축과	2015	공동주택 대형사고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매뉴얼 수	4	4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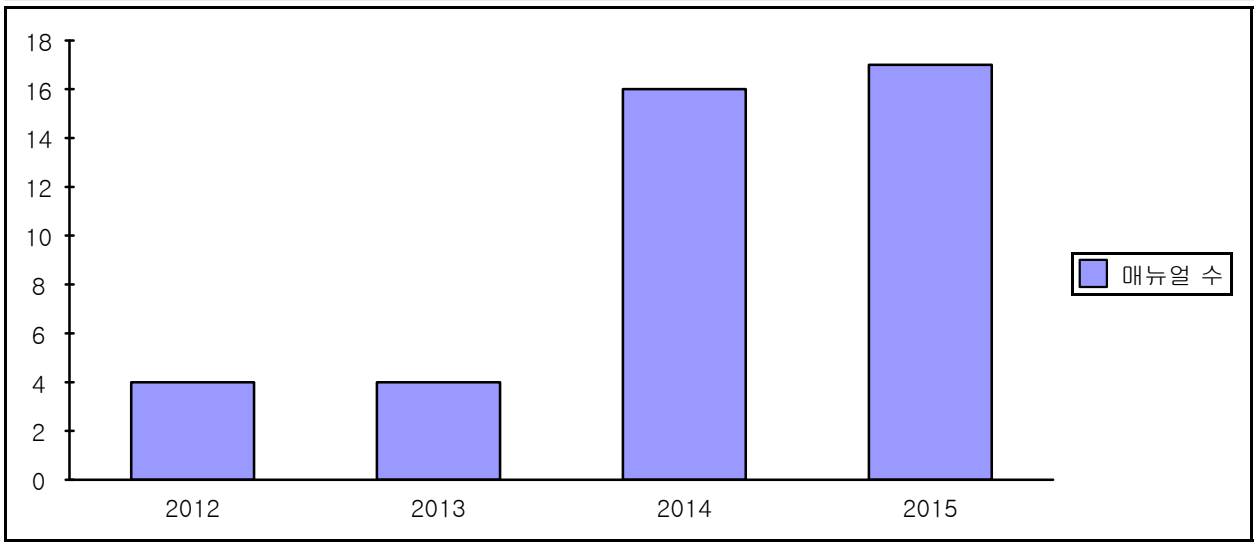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2015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대형사고 표준행동매뉴얼」 신규 작성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 2014년도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73	0.95	0.370	0.789	9

• 2015년도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79	0.95	0.370	0.793	9

* (안전) 1등급/그룹 '가' <- - - - - -> 10등급/그룹 '마' (위험)

【안전도 지수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

안전도 지수	0.4 미만	0.4이상~0.45미만	0.45이상~0.5미만	0.5이상~0.55미만	0.55이상~0.6미만	0.6이상~0.65미만	0.65이상~0.7미만	0.7이상~0.75미만	0.75이상~0.8미만	0.8 이상
안전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년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등 급	라 그룹 (7 등급)	라 그룹 (8 등급)	**마 그룹 (9 등급)**	**9 등급**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228개 시·군·구의 평균 안전도 지수가 0.67로 전년('14년 기준) 0.72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안전해진 것으로 분석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안전도 지수가 전년 보다 소폭 높아져 다소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도 미진단 지자체로서 의무적으로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 예정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4년도 지역안전지수 평가결과 공개

분 야	위 해 지 표 (8)	취 약 지 표 (17)	경 감 지 표 (10)	남 해 군 등 급
화 재	화재 사망자수 화재 발생건수	재난약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병상수 재정자주도 도시지역면적	5등급
교통 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 고속도로사망자 미포함	재난약자수, 기초수급자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의료기관수, 인구밀도 구조구급대원수	3등급
범 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총전입자수, 인구밀도 기초수급자수, 제조업 업체수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경찰관서수	2등급
안전 사고	안전사고 발생건수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시군구외 전입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의료보험료 수납액	4등급
자 살	자살 사망자수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3등급
감염병	감염병 사망자수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기초수급자수, 도시지역면적	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등급
자연 재해	지역안전도진단결과			⑤ 항목 참조

* (안전) 1등급 <- - - - - -> 5등급 (위험)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담당자 : 윤성찬, 전화 : 055)860-342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 556 호 남 해 군 공 보 2016년 4월 1일

알 림

남해군의회 규칙 제24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3월 30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을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남해군의회사무과”를 “남해군 의회사무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분장사무) 본문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 (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시설・해양수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주사

[별표 2]

의회사무과 사무분장표(제4조 관련)

구 분	담 당 사 무
의 회 사 무 과 (사무과장)	o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o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o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o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o 의회경비,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o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o 의정활동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o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o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o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o 청원,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o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o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위원	o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의안에 대한 검토 및 보고 o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o 위원회 운영 보조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o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o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o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사무과 ----------등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분장사무) ---------- 별표 2와 ---

남해군보건소 공고 - 제7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난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 청년·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 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편번호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6 남해군보건소
○ 연락처 : 전화 055-860-8742,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위생안전팀(860-8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끝.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2. 의견 제출자	성명 (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